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 6. 26 선고 2023가합1185(본소), 2023가합1192(반소) 판결
[공사대금 ·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정훈

피고(반소원고)B

피고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기범

변론 종결2024. 5. 29.

판결 선고2024. 6.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9. 3. 28. 체결된 태양광발전소 도급계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2019. 1. 21.과 2019. 3. 28. 체결된 각 태양광발전소 도급계약 및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2019. 1. 10. 체결된 태양광발전소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 및 양수금 채무는 주문 제3항의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61,97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4.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70%는 원고(반소피고)가, 30%는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주식회사 D 및 피고(반소원고) B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20%는 원고(반소피고)가, 80%는 피고(반소원고) B이 각 부담한다.

6.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 소 청 구 취 지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38,714,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2021.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3,714,000원에 대하여는 2022. 12.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722,000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3,003,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22. 12.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9. 3. 28. 체결된 태양광발전소 도급계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9. 1. 21.과 2019. 3. 28. 체결된 각 태양광발전소 도급계약 및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2019. 1. 10. 체결된 태양광발전소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 및 양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1)

반 소 청 구 취 지

원고는 피고 B에게 313,118,6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3,118,6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등

○ E은 2017. 6. 8.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F 외 11필지 지상에 G, H, I, J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라 하고 각 공사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G', 'H', 'I', 'J'라고 특정한다)²⁾를 1,730,300,000원에 도급 주었다. 당시 작성한 공사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발주인 E(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내용)

1. 공사명 : (1) G 태양광 발전소(500kW급 설치공사)

(2) H 태양광 발전소(500kW급 설치공사)

(3) I 태양광 발전소(100kW급 설치공사)

(4) J 태양광 발전소(100kW급 설치공사)

[태양광모듈 제작 및 설치, 계통연계형인버터, 전기공사 포함]

2. 공사장소 : 전라남도 고흥군 F, K, L, M, N, O, P, Q, R, S, T, U

3. 공사기간 :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전력용량 확보 후 5개월 이내에 완공

4. 도급금액 1,730,300,000원

1) 공급가액 : 1,578,070,000원

NEGO금액 : 1,573,000,000원

2) 부가가치세액 : 157,300,000원

5. 대금지급 및 방법

1) 계약금 : 33,000,000원

계약 당일에 지급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민원 및 개발행위 불가)로 발전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즉시 읊은 갑에게 투자자금 일체를 반환한다.

2) 1차 중도금 : 40,000,000원

토목공사시에 지급한다.

3) 2차 중도금 : 300,000,000원

구조물 자재 입고 전에 협의하여 지급한다.

4) 3차 중도금 : 905,000,000원

모듈, 인버터, 접속반, 전기본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여 지급한다.

5) 잔금 : 452,300,000원

사용전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하자이행증권첨부)

7. 하자담보 책임기간 :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3년

8. 하자보수 보증금율 : 3%

제2조(공사내역) 세부 내역은 견적서 참조

1. 태양광모듈 : 330Wp(공사 착공 전 합의 후 결정)- 현대 단결정

2. 인버터 : 25kW급 인버터 4대 채용(접속판, 배정판, 모니터링공사 포함)- SMA인버터

단, 인버터는 토목공사가 끝난 후 선택할 수 있으며, 기 제공된 견적서의 규격과 다른 기종을 선택하였을 경우 그 차액만큼 가감 정산한다.

3. 계통보호장치, 승압장치, 계량장치 등

4. 전기공사 : 모듈설치, 모듈간 배선, 인버터 설치, 계통보호장치, 접속반, 웹모니터링

5. 한전계통연결공사 : 계통병입공사, 각종 안전검사대행, 계통연계 비용 별도

제6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내역서)

을은 계약체결 후 착공시작 전에 설계도서(도면, 시방,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을 포함한다.)를 기초로 작성한 공사예정 공정표와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적합한 공사)

1. 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1. 을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서 개발행위를 완료한다.

제13조(대금지급)

1. 갑은 을에게 제1조 제5항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연 5%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을은 준공검사 완료 후 잉여자재나 폐기물 등을 철거하고 공사장비 및 기기를 반출하고 공사 현장을 정리한 후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한다.

제15조(하자담보)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보증보험증권으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토목, 구조물, 모듈, 접속반, 인버터, 웬스의 공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내용을 갑에게 설명하고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E은 2019년 초경 원고에게 E 측이 설립한 법인을 발주자로 하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E과 원고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인버터 모델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감축분 60,000,000원, 민원 발생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발생분 10,000,000원 등을 고려하여 총 공사대금을 기존보다 55,000,000원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이 대표이사인 피고 C, E의 배우자 X이 대표이사인 피고 D, E의 아들인 B과 원고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9. 1. 10.	피고 D	원고	G 발전소	726,300,000
2019. 1. 21.	피고 B	원고	I 발전소	110,000,000
2019. 3. 28.	피고 C	원고	H 발전소	729,000,000
2019. 3. 28.	피고 B	원고	J 발전소	110,000,000
합계	1,675,300,000			

○ 원고는 2019. 7. 19. Y 주식회사로부터 피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에 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 완료 및 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

○ 원고는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G, I 발전소 공사를 2019. 12. 11.

준공하였고, 이 사건 H, J 발전소 공사를 2019. 12. 23. 준공하였다.

○ 피고 D,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C는 729,000,000원 중 7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하자보수 요구와 원고의 이행 거절

○ 피고들은 2020. 8. 21.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창고 미시공, 펜스, 법면 부실 시공 등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2. 귀사와 H, G, I, J의 1200kW급 태양광발전사업 공사계약을 하여 2019년 완공되었으나 현재까지 창고2개소는 설치되지 않았고, 울타리 펜스와 법면의 하자 수리보수를 수 회 요청한 바,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서면으로 통보하오니 2020년 9월 10.일까지는 처리 바라옵고, 이 후에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하여 처리하고 초과된 비용에 대해서는 귀사에 청구하겠으니 양지 바랍니다.

3. H CCTV는 펜스 넘어짐 관계로 작동이 안되어 A/S 하도급업체에 직접 처리 부탁하여 연결하였고 또한 7번 카메라 연결이 잘못되어 타격받아 화질과 수명에 영향 있다 함. 카메라 고정하는 펜스가 불량하며 또 넘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4. H, G, I, J 모든 부지의 펜스가 흔들리게 부실 시공되어 기울어지고, 넘어져 찢어지고, 8월 16일 현지에 가본 바 수년 유지되어야 할 시설물인데 녹슨 철사와 침닝쿨로 묶어 놓은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고, 기둥받침이 흠에 고정이 안돼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 G 서측 부지에 토사측구가 잘 안되어 법면이 훼손되고 C 입구 동쪽 부지 법면이 차광막 밑으로 훼손되어 흙과 강판보강이 필요하고 J 입구측과 법면이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상 설계도면에 창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펜스 및 법면 등의 하자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하자보수 이행을 거절하였다.

○ 피고들은 2020. 9.경 Y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구하였고, Y 주식회사는 현장 조사를 거쳐 2020. 12. 15. 원고에게 '원고가 2020. 12. 21.까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채무내용을 다투는 정황 등이 없는 경우 보험금 합계 6,242,400원(I 867,000원, J 1,271,600원, H 1,734,000원, G 2,369,8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제기 등

○ 원고는 2020. 12. 22.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피고들의 하자보수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 C, D은 이 사건 본소 계속 중인 2021. 3. 26. 피고 B에게 피고 C, D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하자보수에 갈음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피고 B은 2021. 3. 30.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반소장 및 첨부서류의 송달을 통해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피고들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 가) 피고 C는 원고에게 총 공사금액 729,000,000원 중 15,0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E의 요청에 따라 2019. 3. 1.부터 2019. 9. 11.까지 이 사건 각 발전소에 토사수로 및 제초매트 설치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400kW 용량의 태양광 시설 증설 목적으로 토목 및 도로 개설 공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태풍 및 폭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2019. 11. 28.부터 2019. 12. 4.까지 이 사건 H 발전소에 관하여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실시한 추가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본소 청구취지 가.항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0. 8. 21.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창고 미시공, 펜스 및 법면 부설시공 등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는 모두 최초 발주자인 E이 지시하는 대로 시공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시공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특히 피고들이 주장하는 펜스 흔들림 등의 하자는 천재지변이나 피고들 측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3) 제1조 제5항 1)의 단서 부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H 발전소 공사에 관한 민원을 해결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시공 중 배수로 공사를 잘못 하는 바람에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C는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기 위해 미지급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민원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므로, 이로써 미지급 공사대금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H 발전소 공사 중에 인접 토지 소유자인 Z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피고 C가 2019. 4. 19. Z에게 민원 해결 차원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Z에 대한 민원 해결 비용 1,500만 원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조 제5항 1)의 단서 부분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H 발전소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민원을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그 문구상 계약금 지급시기를 정함과 동시에 민원이나 관련 법규 위반 등 원고와 피고들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각 공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원고에 대해 계약금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해 일체의 민원 해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민원 해결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 피고 C는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만일 실제로 민원이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귀책사유가 있는 원고가 이를 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Z의 민원이 원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오히려 Z는 이 사건 H 발전소 부지에 인접한 전남 고흥군 V 토지 소유자로서 경계 부지 침범이나 상린관계로 인한 피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소유권에 기인한 민원은 발전소 부지 소유자인 발주자에게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실제로 E은 원고가 민원 해결 차원에서 Z를 위해 실시한 수로관 및 집수정 공사비를 반영하여 총 공사대금을 조정해주었던바, 위 민원 해결의 책임이 발주자 측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들에 대한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지급채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추가 시공이 인정되는 부분

감정인 AA의 2022. 1. 26.자 감정, 2022. 10. 18.자 감정보완 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 시공된 부분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H	N, Q, U 상부 토목 및 콘크리트 타설 추가공사	4,609,000
AB 도로절단 횡단도로공사, 기초이설 추가공사	7,119,000	
○ 차광막 로프고정, 코어네트공사, 플룸관 도로개설 추가공사	7,010,000	
AC 국공유지 복구 추가공사	262,000	
N 외 7필지 내 토사수로 추가공사	690,000	
○ 배수로 집수정 교체 현장보수	958,000	
G, I	콘크리트 블록쌓기, 사면정리, 배수로 유실사업장 정리	3,066,000
F 외 7필지 내 토사수로 추가공사	722,000	
J	T 벌목 플룸관 설치 추가공사	588,000
T 내 토사수로 추가공사	3,002,000	
합계	28,026,000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중 전남 고흥군 N, R, S, L 토지에 200kW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실시한 토목공사 비용은 기존 공사계약에 포함된 부분이라고 보이므로, 추가 공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2)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추가공사 부분이 존재하는 외에 피고들과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1)항의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E의 요청으로 추가공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피고들과 사이에 추가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여기에 원고와 E 사이에 2017. 6. 8.자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공사 진행 중인 2019년 초경 서로 간에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새로이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원고와 피고들 측 E은 인버터 모듈 변경으로 인한 감축분과 원고의 민원 해결을 위한 수로관 및 집수정 추가 공사분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외의 사항은 협의 대상이 아니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1)항의 추가공사 내역4) 및 감정된 추가공사비용 합계가 이 사건 각 발전소 총 공사대금에서 해당하는 비중(약 1.6%)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1)항의 추가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5) 3) 원고의 기타 주장 원고는 변경 시공된 부분 중 코어네트 등 동산이 추가 설치된 부분은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피고들은 위 부합물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추가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예비적으로 민법 제261조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적법·유효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상 하자가 있고, 원고가 이에 대해 피고 B에 대해 61,975,80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 및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아래 3. 다. 2)항 및 3)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양수금 채무는 위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B이 이를 초과하여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H 발전소 준공일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2. 16.까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6)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자연손해금율에 관한 약정이 있으므로 상법상 법정이율은 적용할 수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1) 재료비 차액 상당의 공사대금 반환 청구 E과 원고 사이의 2017. 6. 8.자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1,730,300,000원은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를 기초로 계산하여 정하여진 금액이다. 그러나 원고는 위 견적서에 기재된 태양광 모듈 금액 641,520,000원(= H 267,300,000원 + I, J 106,920,000원 + G 267,300,000원), 인버터 금액 204,000,000원(= H 85,000,000원 + I, J 34,000,000원 + G 85,000,000원)에 미달하여 이 사건 각 발전소에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를 설치하였다. 원고가 설치한 태양광 모듈은 453,294,400원(= 370w 모듈 단가 140,600원 × 3,224장), 인버터는 122,400,000원(= Delta 50kw 인버터 단가 5,100,000원 × 24개)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당시 공사금액에 관하여 피고들 측을 기망하였거나 잘못된 견적서를 제시함으로써 피고들 측으로 하여금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 다만, 이미 공사가 완공되어 피고들이 이익을 얻은 부분은 공제하고, 재료비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재료비 변동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에게 태양광 모듈 차액 상당액 188,225,600원(= 641,520,000원 - 453,294,400원) 및 인버터 모듈 차액 상당액 21,600,000원(= 204,000,000원 - 122,400,000원 - 변경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미리 감축하여 준 6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보수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 사건 각 발전소에 관하여 원고가 시공을 잘못하거나 설계도면과 달리 미시공된 부분이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03,293,000원(= 시공상 하자 93,613,000원 + 미시공 하자 9,6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채권 양수 피고 D, C는 피고 B에게 위 1), 2)항 기재 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본안전항변 피고 D, C와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계약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실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반소 중 양수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 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 D이 2021. 3. 26. 피고 B에게 피고 C, D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하자보수에 갈음한 채권 일체를 양도한 지 4일 만인 2021. 3. 30. 피고 B이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들과 피고 B 사이의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 최초에 원고와 E 사이에 체결되었다가 피고별로 나누어 체결된 경위, 이 사건 각 발전소 4개소는 크게 두 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피고들이 각각의 도급계약별로 나누어 권리를 행사하기보다 피고 B이 이를 양수받아 각 발전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율적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들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이후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원고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원고는 2024. 5. 28.자 준비서면에서 본안전항변을 처음으로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 D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 본안에 관한 판단

1) 공사대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E와 원고 사이에 2017. 6. 8.자로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E의 요청으로 피고들을 발주자로 하여 각 발전소 별로 도급계약서가 새로 작성된 사실, 당시 원고와 E은 인버터 모델을 SMA에서 델타로 변경함으로 인한 공사비 감축분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공사대금을 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발전소에 설치될 모듈, 인버터의 모델과 수량을 협의한 후 이를 기초로 한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의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본소), 44781(반소)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중요부분을 착오하였다거나, 원고가 협의의무를 불이행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B의 공사대금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감정인 AD의 2021. 8. 3.자 및 2022. 1. 26.자 각 감정 결과, 이 법원의 AD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증인 A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상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 구체적인 내역과 판단 근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103,293,000원(= 시공상 하자 93,613,000원 + 미시공 하자 9,68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시공상 하자

부지 경계 이탈하여 설치된 펜스 철거 및 재시공	74,924,000	- 타 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된 부분, 경계와 일치하거나 경계 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부지조성 위한 보강공사 등의 미실시로 펜스가 전도되거나 흔들리는 부분을 하자로 인정함.- 원고는 피고들 측 E의 지시를 받아 해당 위치에 펜스를 설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다만, 증인 AE의 일부 증언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원고 측에게 일부 펜스 설치 지점을 이동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발전소의 경계를 확정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 경계에 맞추어 정확한 위치에 펜스를 시공할 책임은 시공사인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가 피고들 측과 경계 침범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펜스 설치 지점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E의 의견 제시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만연히 받아들여 부지 경계를 이탈하여 펜스를 설치한 이상 원고가 하자보수책임을 면할 수 없음.- 원고는 ① G, I 발전소의 경우 설계도면에 펜스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부지 경계 안쪽으로 설치된 펜스 부분은 경계 침범이라고 볼 수 없어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감정인의 보수비용 산정방법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으므로 하자 감정 결과 및 공사금액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발전소 공사에 있어서 부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추후 경계 침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 경계선상에 펜스가 설치될 필요가 있고, 원고도 위와 같은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기재가 없음에도 G, I 발전소에 펜스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정인은 부지 경계 안쪽으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이 부지조성 보강공사 미실시 등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전도되거나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반영하여 부지 경계 안쪽으로 설치된 펜스 부분을 하자로 판정한 점, ③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590 판결 등 참조),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책임 제한 단계에서 참작함.
무너진 펜스 철거 후 재시공	452,000	- 펜스 기초와 기둥 사이의 유격 발생 또는 부지조성 보강공사 미실시로 인해 펜스 기초가 노출되어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펜스 부분을 하자로 인정함.- 원고는 ① 피고들 측 E의 지시를 받아 해당 위치에 펜스를 설치한 것이고, ② 자연재해 또는 피고들의 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E이 보강공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로 해당 위치에 펜스를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펜스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펜스 기초를 단단히 설치하여야 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점, ② 태풍으로 인해 펜스가 무너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시공할 책임도 원고에게 있는 점, ③ 피고들의 관리상 잘못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책임 제한 단계에서 참작함.
흔들리는 펜스 철거 후 재시공	2,199,000	
배수 불량한 벤치플룸관 철거, 구배 형성 및 측구 재설치 비용) 원고는 이 부분 공사가 피고들 측 E의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은 채 상계항변과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있으나(2022. 3. 4.자 준비서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16,038,000	- 벤치플룸관이 설치된 부분 중 구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배수가 불량한 부분을 하자로 인정함.- 원고는 이 사건 각 발전소에 설치된 벤치플룸관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배수 불량한 피고들의 관리상 잘못임에도 이를 시공상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현장 조사 당시 측량에 의한 고저차, 담수에 의한 배수 등을 확인하여 구배 미시공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하다고 감정하였고,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들의 관리상 잘못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부지 경계 이탈하여 설치된 펜스 철거 및 재시공	74,924,000	- 타 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설치된 부분, 경계와 일치하거나 경계 내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부지조성 위한 보강공사 등의 미실시로 펜스가 전도되거나 흔들리는 부분을 하자로 인정함.- 원고는 피고들 측 E의 지시를 받아 해당 위치에 펜스를 설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다만, 증인 AE의 일부 증언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원고 측에게 일부 펜스 설치 지점을 이동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각 발전소의 경계를 확정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 경계에 맞추어 정확한 위치에 펜스를 시공할 책임은 시공사인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가 피고들 측과 경계 침범 문제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펜스 설치 지점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E의 의견 제시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만연히 받아들여 부지 경계를 이탈하여 펜스를 설치한 이상 원고가 하자보수책임을 면할 수 없음.- 원고는 ① G, I 발전소의 경우 설계도면에 펜스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부지 경계 안쪽으로 설치된 펜스 부분은 경계 침범이라고 볼 수 없어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감정인의 보수비용 산정방법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으므로 하자 감정 결과 및 공사금액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① 발전소 공사에 있어서 부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추후 경계 침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 경계선상에 펜스가 설치될 필요가 있고, 원고도 위와 같은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기재가 없음에도 G, I 발전소에 펜스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감정인은 부지 경계 안쪽으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이 부지조성 보강공사 미실시 등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전도되거나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반영하여 부지 경계 안쪽으로 설치된 펜스 부분을 하자로 판정한 점, ③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590 판결 등 참조),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책임 제한 단계에서 참작함.
내지 추가공사 대금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합계	93,613,000	

(2) 미시공 부분

G	법면 보호공사 313m ²	2,170,000(8) 현재 시공 현황상 법면 보호공사 실시가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금액은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상 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감정인의 2022. 1. 26.자 감정서 2권 35면).	- 설계도면과 달리 미시공된 부분을 하자로 인정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코아네트, 벤치플룸관 등을 모두 설치하였고, 진입로 포장 부분은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H, J 발전소의 경우 부지 경계를 따라 사면이 존재하고 코아네트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G 발전소의 경우 부지 경계가 수직으로 시공되어 있어 법면보호공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미시공 하자로 판정한 점, 그 외에 설계도면상 계획한 부분과 감정 당시 현장 조사 결과 시공 현황이 상이한 부분을 미시공 하자로 판정한 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H	벤치플룸관 80m	3,010,000	
집수관 2개소	630,000		
J	진입로	690,000	

G	법면 보호공사 313m ²	2,170,0008) 현재 시공 현황상 법면 보호공사 실시가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금액은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상 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감정인의 2022. 1. 26.자 감정서 2권 35면).	- 설계도면과 달리 미시공된 부분을 하자로 인정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코아네트, 벤치플룸관 등을 모두 설치하였고, 진입로 포장 부분은 설계도면에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H, J 발전소의 경우 부지 경계를 따라 사면이 존재하고 코아네트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달리 G 발전소의 경우 부지 경계가 수직으로 시공되어 있어 법면보호공사를 실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미시공 하자로 판정한 점, 그 외에 설계도면상 계획한 부분과 감정 당시 현장 조사 결과 시공 현황이 상이한 부분을 미시공 하자로 판정한 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포장 (두께 150mm, 면적 45m ²)		
파형강관 [24m (지름 600mm), 8m(지름 400mm)]	850,000		
벤치플룸관 62m	2,330,000		
합계	9,680,000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피고들 측 E이 발주자로서 공사에 관여하면서 펜스 설치 지점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펜스가 부지 경계선과 불일치하게 설치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G, I 발전소 공사상 설계도면에 펜스 설치 기재가 없음에도 원고가 이를 시공한 점, 일부 펜스가 무너지거나 흔들리는 것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펜스 설치 공사금액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신의칙 원칙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 C, D으로부터 하자보수채권을 양수한 피고 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양수금으로 61,975,800원(= 103,293,000원 × 0.6)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발전소 공사가 최종적으로 완공된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B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피고들 부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일호

판사함철환

판사전명재

1) 원고는 피고들 별로 체결한 각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이 2020. 8. 21.자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하자보수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으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발송한 2020. 8. 21.자 내용증명의 내용과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 C, D이 피고 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2) G 발전소는 전남 고흥군 F, K, L, M 지상에, H 발전소는 전남 고흥군 N, O, P, Q, R, S, U 지상에(공사 진행 중에 V 토지가 부지로 포함되었다), I 발전소는 전남 고흥군 M 지상에(공사 진행 중에 W 토지가 부지로 포함되었다), J 발전소는 전남 고흥군 T 지상에 각 설치된다. G와 I가 동측, H와 J가 G로부터 북서측에 위치하고, I, J는 소규모의 어레이(Array, 모듈이 여러 장 연결되어 일정 발전규모가 되는 단위)로 구성된 2개 단지의 태양광 발전소이다.

3) 원고가 E과 최초로 작성한 2017. 6. 8.자 공사계약서를 의미한다. 피고들과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 도급금액, 지급방법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뿐이고, 위 2017. 6. 8.자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내용들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기간, 도급금액의 일부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 2017. 6.

8.자 공사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사계약서의 내용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4) 토지 현황에 맞추어 기존 설계를 변경하는 공하나 배수로 설치 공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공사 등은 시공사가 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공사는 시공사의 시공상 하자로 인하여
시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5) 피고들은 원고의 추가공사 대금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예비적 상계항변(2024. 5. 27.자
준비서면)을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E 사이의 2017. 6. 8.자 공사계약서를 의미한다.

7) 원고는 이 부분 공사가 피고들 측 E의 지시에 따른 추가공사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함을 전제로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은 채 상계항변과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있으나(2022. 3. 4.자 준비서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추가공사 대금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8) 현재 시공 현황상 법면 보호공사 실시가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금액은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상 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감정인의 2022. 1. 26.자 감정서 2권 35면).